

융합교육지원센터 운영규정

(제정 2017. 6. 1.)

(제명변경 2017. 9. 1.)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융합교육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7.9.1.>

제2조(업무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다만, 인력양성부문의 사업운영은 관련 규정에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, 행정 및 회계에 관한 세부업무는 해당학과가 소속된 대학 및 대학원에서 수행한다.

1. 융합교육, 산학협력친화형 인력양성, LINC3.0 성과확산 운영기획 <개정 2022.3.29.>
2. 슈퍼스타칼리지(SuperStar College) 융합학부 운영 지원 <개정 2020.3.1.>
3. 연계전공, 융합전공, 마이크로전공 신설 및 폐지 <개정 2021.12.14.>
4. 복수(부) 전공 관리 및 운영 지원
5. 학과단위 사회수요맞춤형, 산학협력친화형인력양성사업 운영 지원
6. LINC3.0 미참여 학사단위에 대한 산학협력체제 공유 및 확산 프로그램 운영 <개정 2022.3.29.>
7. 대학 조직 간 유기적 산학협력체제 구축 및 운영
8. 대학의 산학협력여건 및 체질 개선을 위한 공동인프라 마련
9. 그 밖에 융합교육, 산학협력친화형 인력양성 및 LINC3.0 성과확산에 관한 사항 <개정 2022.3.29.>

[본조개정 2017.9.1.]

제3조 삭제 <2020.3.1.>

제2장 조직

제4조(센터장) ① 센터에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③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, 센터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.

[본조개정 2017.9.1.]

제5조(연구 및 행정인력) 센터의 업무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원, 행정직원, 조교 등의 인력을 둘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17.9.1.]

제3장 운영위원회

제6조(설치) 융합교육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융합교육 운영위원회(이하 ‘운영위원회’라 한다)를 둔다.

제7조(구성) ① 운영위원회는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.

③ 교무부처장, 학생취업부처장, 기획부처장, LINC3.0사업단 창의인력양성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, 그 밖의 위원은 본교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. <개정 2022.3.29.>

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하며,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⑤ 운영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, 간사는 교육혁신지원실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. <개정 2019.9.1.>

[본조개정 2017.9.1.]

제8조(기능)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한다. <개정 2019.12.20.>

1. 연계전공, 융합전공, 마이크로전공 신설 및 폐지 <개정 2021.12.14.>
2. 주전공으로 인정하는 융합전공의 승인
3. 융합교육업무 상시 모니터링 및 개선을 위한 결과 환류
4. 융합교육업무추진에 따른 긴급한 사안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
5. 센터의 예산 및 지출 심의
6. 그 밖에 센터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

[본조개정 2017.9.1.]

제9조(회의)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,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,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.

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,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

제4장 재정 및 회계

제10조(재정 및 회계) 센터의 재정은 교비 및 재정지원 사업, 인력양성 사업 예산으로 운영하며, 회계는 본교 재무 및 회계 규정에 따른다. <개정 2017.9.1.>

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21.12.14.>

이 규정은 개정 공표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22.3.29.>

이 규정은 개정 공표된 날부터 시행한다.